

창원지방법원 2015. 4. 1 선고 2014나945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15. 3. 11.

판결 선고 2015. 4. 1.

제 1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. 8. 19. 선고 2012가단1192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

1. 통영시 C 갑종지 57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1㎡ 지상 블록구조 패널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48.6㎡, 별지 도면 표시 (다) 부분 2㎡ 1) 지상 정화조물탱크를 각 철거하고, 위 갑종지 572㎡를 인도하며,

2. 2014. 7. 31.부터 위 1항 기재 잡종지 572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, 콘크리트 포장공사, 상하수도 공사, 정화조 설치공사, 전력인입공사 등을 하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등 위 토지에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의 유익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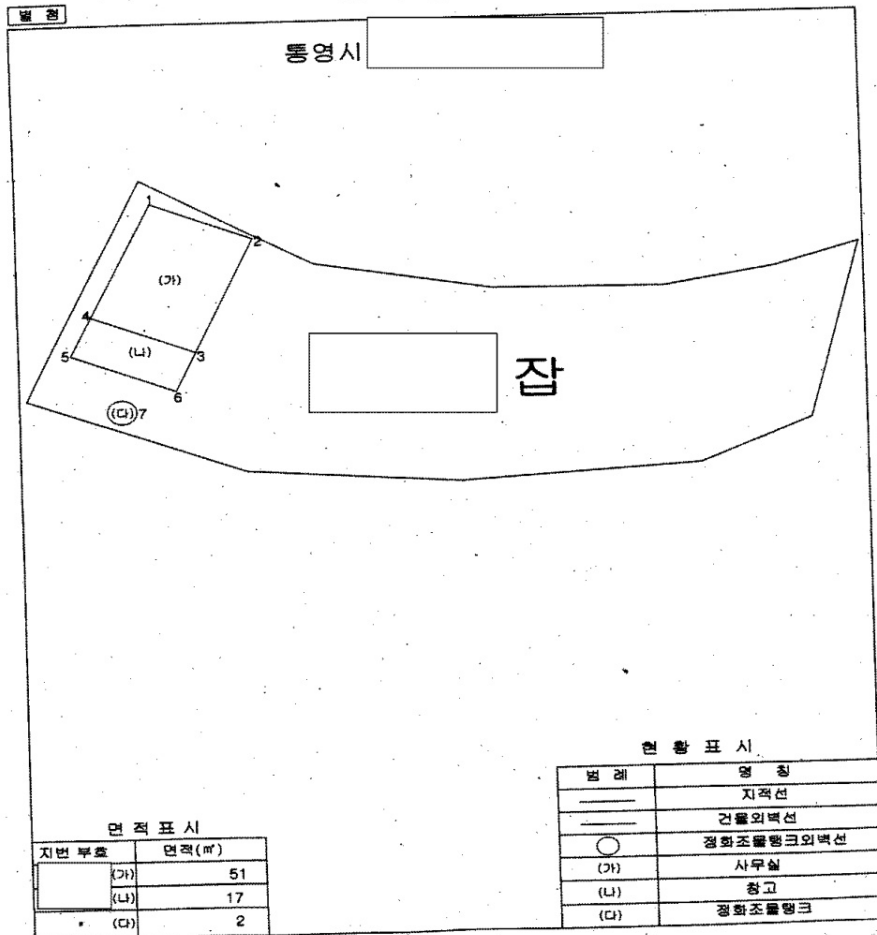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을 제3, 5,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, F,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1억 원 이상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진원, 판사 홍은아, 판사 신정민

감 정 도



1) 2014. 7. 1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(감축)신청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 위 (다) 부분의 면적 10m²는 착오기재로 보인다.